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6,243,192	12,487,296
일반회계	367,172,183	11,015,165
특별회계	49,071,009	1,472,130
공기업특별회계	37,521,733	1,125,652
상수도공기업	15,073,523	452,206
하수도공기업	22,448,210	673,446
기타특별회계	11,549,276	346,478
의료급여기금운영	1,153,694	34,61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98,706	11,961
수질개선	553,215	16,596
농공지구조성사업	5,906,510	177,195
공영개발사업	431,134	12,93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79,955	8,399
주택사업	2,300,086	69,003
기반시설	17,475	524
장기미집행	508,501	15,25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98,48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제3회 추경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한다.